

『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4일

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권 순 형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 시행하며,
-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상위법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위 조항이 포함된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보편적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)
- 입장제한 삭제(안 제9조)
- 행위제한 삭제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
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7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- 본 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주차료 면제 혜택 확대와 상위법령에 미규정된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개정 반영하고, 기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,
 -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 적용시키며,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편적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